교위 성과평가 규정

2001. 01. 27. 최초제정2018. 01. 01. 전면개정2001. 04. 16. 부분개정2018. 11. 01. 부분개정2002. 04. 30. 부분개정2019. 01. 01. 부분개정2006. 12. 08. 부분개정2021. 01. 01. 부분개정2008. 09. 30. 부분개정2022. 03. 01. 부분개정2010. 02. 01. 전면개정2023. 01. 01. 부분개정2012. 08. 01. 부분개정2024. 01. 01. 부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교원의 개인성과평가와 대학성과기여도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구의욕을 고취시킴은 물론, 산학활동을 장려하여 대학의 발전과 건학이념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1.01., 2022.03.0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평가영역 및 정의) 개인성과평가와 대학성과기여도평가를 나누어 평가한다.<개정 2022.03.01.>

- 1. 개인성과평가라 함은 교수 개인 업적에 대한 평가로서 교원의 교육, 연구, 산학활동에 관한 평가를 말한다.
- 2. 대학성과에 대한 기여도 평가라 함은 학과평가, 대학업무 및 사업참여도, 대학발전공 헌도 평가 등 대학 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관한 평가를 말한다.
- 3. 대학성과에 대한 기여도 평가 중 가·감점 평가라 함은 교원 개인에 대한 포상 및 징계, 가치관 평가, 자기평가를 말한다.<개정 2022.03.01.>
- 4. 규정에서는 개인성과평가와 대학성과 기여도평가를 합쳐 교원성과평가라 칭한다.<신설 2022.03.01.>

제4조(평가의 예외인정) ①평가기간 내에 휴직, 연수, 연구년, 공무 등으로 6개월 이상 승인받은 전임교원은 성과평가에서 제외한다. 제외된 자는 전년도 평가를 준용한다.

- ②정년퇴직까지의 잔여기간이 평가서 제출 기준 2년 이하인 전임교원은 성과평가에서 제외한다. 단, 승진/재임용 등의 사유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01.01.>
- ③신규 임용 후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전임교원은 성과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2장 평가절차 및 심의기구

제5조(평가시기 및 절차) ①교원의 성과평가는 매년 1월초에 직전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성과에 대하여 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학기 중에도 평가할 수 있다.

- ②전임교원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 교원성과평가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기재 사항이 발견된 경우 재평가 및 이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③전임교원은 성과자료를 교원성과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교원성과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성과자료를 평가·심의하고 그 결과를 각 교수에게 통보하거나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개인 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11.01., 2022.03.01.>
- ④성과평가 시 예정성과는 예정증명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기한 내에 결과 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배점기준 및 평가방법)** 전임교원은 [별표 1-1], [별표 1-2]와 같이 개인성과평가, 대학성과에 대한 기여도 평가로 받는다.<개정 2018.11.01.. 2022.03.01.. 2023.01.01.>
- 제7조(교원성과평가위원회) ①교원성과를 평가 관리함에 있어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성과평가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11.01.>
- ②교원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임교원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선임하여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담당하게 한다.<개정 2018.11.01.>
-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원성과 평가 및 관리의 기본원칙
- 2. 교원성과 영역별 평가항목과 기준 및 배점
- 3. 교원성과 평가 관련규정의 개폐
- 4. 교원성과 평가 점수 결과의 이의신청
- 5. 특별성과 평가영역에 대한 세부사항
- 6. 전문학술지 목록 지정
- 7. 기타 교원성과 평가와 관련된 사항
- ⑤위원회에서 행하는 교원성과평가 제반 행정 업무는 전임교원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 팀(센터)장이 담당한다.
- ⑥위원회 위원 및 업무관련자는 평가로부터 취득한 평가결과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공개했을 경우 징계조치한다.
- 제8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성과평가 점수에 대한 재심의 청구) ①교원성과평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다. 교원성과평가위원회에서는 이를 재심의한다. 다만, 제출서류 미비 등 평가 대상교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은 재심의 대상이 될수 없다.<개정 2018.11.01., 2021.01.01., 2022.03.01.>
- 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재심 청구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재심청구에 따른 제반 사항에 관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③이의 신청은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교원성과평가위원회는 본인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11.01., 2022.03.01.>

제3장 개인성과평가

제1절 교육업적평가

제10조(교육업적평가기준) ①교육업적 평가는 [별표 2-1]에 따른다. 단, 수업시간에서 야간 시수 반영 시에는 최대 6.6점 또는 5.6점까지 인정된다. <개정 2018.11.01., 2022.03.01., 2024.01.01.>

②교양 교육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다. 단, 수업시간에서 야간 시수 반영 시에는 최대 6.6점 또는 5.6점 까지 인정된다.<신설 2018.11.01., 개정 2022.03.01., 2024.01.01.>

③각 항목별 평가는 세부 항목별에 배정된 점수에 의거 계산한다. 단, 각 항목별 배정된 점수를 초과할 경우 그 항목의 최고점수로 평가한다.<개정 2018.11.01.>

제11조(수업시간) ①수업시간은 주당 평균 수업 시수, 야간 강의 배분, 주당 수업일수로 구분한다.<개정 2018.11.01.>

②각 항목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1.01., 2024.01.01>

- 1. 주당 평균 수업 시수는 직책별로 정해진 책임시수 이상인 경우 학기당 1.5점 또는 1.25점, 책임시수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당 0.3점씩 감점한다.
- 2. 야간 강의 배분은 야간강의가 있는 경우 학기당 0.3점, 야간강의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 3. 주당 수업일수는 직책별로 정해진 책임일수 이상인 경우 학기당 1.5점 또는 1.25점, 책임일수 미만인 경우에는 1일당 0.3점씩 감점한다.
- 제12조(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①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은 교육과정 개발, 교육보조재 개발, 가상강의용 교육콘텐츠 운영, NCS&현장중심형 교육과정 운영, 비정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분한다.
- ②교육과정 개발이란 신규학과 및 학제변경학과(전공심화, 학점은행제 등), 계열변경학과 등에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기존의 유사학과 또는 유사전공 코스의 교육과정과 50% 이상 다른 경우 혹은 기존 학과의 교육과정을 60% 이상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며 건당 1.2점으로 평가한다. 또한, 연구 실적 인정 환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교내연구과제로 수행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11.01.>
- ③교육보조재는 교과목의 강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제작하여 LMS시스템에 등록한 교육보조재(강의 자료)를 의미하며, 교육보조재는 컴퓨터 파일로 작성해야 한다. 교육보조재는 과목당 1.2점으로 평가하며 개설 반수에 따라 배수로 평가한다.(과목당 1.2점 × 개설 반수)<개정 2018.11.01., 2021.01.01.>
- ④가상강의용 교육콘텐츠 개발은 사이버 상에서 교과목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가

상강의용 콘텐츠를 제작한 것을 의미한다. 가상강의용 콘텐츠로는 원격수업 콘텐츠, AR/VR/메타버스 활용 콘텐츠 등을 의미하며 직접 활용 가능한 상태로 제작되어 운영된 것이어야 하며, 개발된 가상강의용 콘텐츠는 과목당 1.2점으로 교원성과평가위원회가 확인하여 평가한다.<개정 2018.11.01., 2024.01.01>

- ⑤혁신교육과정 운영은 소단위 전공과정, 융복합교육과정, 주문식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등이 해당되며 1.2점으로 평가하며 개설 반수에 따라 배수로 평가한다.<개 정 2018.11.01., 2024.01.01>
- ⑥혁신교수법은 PBL, 마이크로러닝, 팀 프로젝트, 협동학습, 플립러닝, 액션러닝, 팀기반학습, 팀티칭, 블렌디드러닝 등을 활용한 교수법을 운영한 것으로 0.6점으로 평가하며 개설반수에 따라 배수로 평가한다. <개정 2018.11.01., 2024.01.01>
- **제13조(학생지도)** ①학생지도는 학생상담 및 지도활동, 학과행사 참여지도 활동, 교과외학생 학습활동 및 동아리지도활동으로 구분된다.
- ②학생상담 및 지도활동은 학생종합이력관리시스템에 탑재된 학생 상담 건수에 의해서 만 평가하며 1인당 0.036점씩 평가한다.<개정 2018.11.01.>
- ③학과 행사 참여 지도 활동은 학과의 학생이 포함된 관련된 행사(연합 MT, 청운축제 및 체육대회, 동문회 등)를 의미한다. 참여 행사 1건당 0.6점씩 부여하고 최대 3점(5건) 까지 인정한다.<개정 2018.11.01.>
- ④교과 외 학생학습활동 및 동아리 지도활동은 수업 외 논문지도, 일반·전공 동아리지도, 각종 경시대회 지도실적 등을 의미하며, 양식은 '[별지 제2호 서식]교과 외 학생학습활동 및 동아리 지도활동 참여일지'와 같다. 평가는 활동 인정 건수 당 0.6점씩 평가한다.<개정 2018.11.01., 2021.01.01.>
- 제14조(수업활동) ①수업활동 부분은 강의계획서 입력, 성적 입력으로 구분한다.
- ②강의계획서 입력은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과목의 입력이 이루어진 경우 학기당 0.9점 또는 0.6점을 부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0.6점 또는 0.4점을 부여한다.<개정 2018.11.01., 2021.01.01., 2024.01.01>
- ③성적 입력은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과목의 입력이 이루어진 경우 학기당 0.9점 또는 0.7점을 부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0.6점 또는 0.4점을 부여한다.<개정 2018.11.01., 2021.01.01., 2024.01.01>
- **제15조(강의평가)** ①강의평가는 학기별로 평가된 강의평가 점수를 반영하여 부여한다. <개정 2018.11.01.>
- ②강의평가는 학기당 최대 3점 또는 2.5점을 부여하며, 학기당 2회 이상 평가가 이루어 지면 평균 점수를 반영하도록 한다.<신설 2018.11.01., 2024.01.01>

제2절 연구업적평가

- 제16조(연구업적평가기준) ①연구업적평가는 [별표 2-1]에 따른다.<개정 2018.11.01., 2022.03.01.>
- ②교양 교육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다.<신설 2018.11.01.><개정

2022.03.01.>

③각 항목별 평가는 세부 항목별에 배정된 점수에 의거 계산한다. 단, 각 항목별 배정된 점수를 초과할 경우 그 항목의 최고점수로 평가한다. 단, 연수활동의 경우 재임기간 25년 이상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격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최대 9점/6점(교양 교육 전임 교원은 16점/6.6점)까지 인정하여 평가한다.<개정 2018.11.01., 2023.01.01., 2024.01.01>

④논문게재, 저서, 각종 발표, 개발, 창작, 수상, 연구보고서 등에 관련한 실적이 2인 이상 공동인 경우에는 제17조 연구 실적 인정 환산율에 따라 배분한다.<개정 2018.11.01., 2023.01.01.>

⑤연구업적에 대하여 등급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미제출 시에는 각 영역별 최하 등급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신설 2018.11.01.>

제17조(연구 실적 인정 환산율) 연구 업적물의 공동연구에 따른 인정 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	환산율	연구책임자
1인	100 %	100 %
2인	70 %	80 %
3인	50 %	60 %
4인 이상	30 %	50 %

연구책임자라 함은 논문, 저서, 개발물, 창작물, 연구보고서의 총괄책임자, 제1저자, 교신 저자를 말한다.

제18조(논문게재, 초청강연, 기조강연) ①논문은 해당학술지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동일한 논문이 서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 ③논문은 원칙적으로 게재된 학술지에 따라 발간 년도기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예정 업적은 당해 연도 게재예정증명서로 평가할 수 있고 각 학술지의 등급별 기준 및 평가 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1.01.>
- 1. SCI, SSCI, A&HCI, SCIE, Medline 급 학술지에 논문 게재는 16.8점으로 평가한다.
- 2. 한국연구재단(구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홍재단) 등재 및 등재 후보지에 논문은 1 2.6점으로 평가한다.
- 3. 국내외 대학발간 학술지, 해외 전문학술지 또는 전국규모의 국내 전문학술지에 논문 게재는 8.4점으로 평가한다.
- 4. 지방규모의 국내 전문학술지에 논문 게재는 6점으로 평가 한다.
- 5. 국제학술대회 초청강연, 기조연설은 12.6점으로 평가한다.
- 6. 국내학술대회 초청강연, 기조연설은 8.4점으로 평가한다.
- 7. 학술지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가. 발행기관: 국내외 대학 및 전문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 나. 회원 및 투고자: 회원, 투고자, 구독자의 분포가 전국규모인 학술지
- 다. 심사제도: 논문게재 심사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전문학술지
- 라. 발행횟수 및 통권: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간되며, 통권 5호 또는 2년 이상 계

속적으로 발간된 학술지

④상업출판사나 기타 기관, 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전문분야의 종합 잡지는 원고지 50매이상 또는 질과 양에서 해당학술지의 수준에 견줄만하다고 교원성과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게재 내용이어야 한다.<개정 2018.11.01.>

⑤초청강연, 기조강연은 실제 발표자만 인정하며, 강연내용이 해당 학술지에 수록되거나 프로그램에 등재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9조(저서) 저서의 각 평가항목별 정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1.0 1.>

- 1. ISBN을 발급받은 국제적 전공 학술저서 또는 국제적 교재란 국외에서 저자의 이론 적 체계를 구성하여 독창적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출판된 전공분야의 전문 학술저서 를 말하며 건당 12.6점으로 평가한다.
- 2. ISBN을 발급받은 국내 전공 학술저서, 교재란 국내에서 저자의 이론적 체계를 구성하여 저술한 학술저서, 대학전공교재를 말하고, 전문 학술 영역의 번역서, 교양서란 전공분야의 학술서 또는 문예창작집을 국어나 외국어로 번역 출판한 서적을 말하며, 전공영역의 문제집이란 자격증취득이나 진학 등을 위하여 출판된 서적 또는 기타의 서적으로 건당 8.4점으로 평가한다.
- 3. 초중등 학교 검인정 교과서란 광역시도 교육감 이상의 기관장 또는 검인정 기관에서 검인한 교과서를 말하며 건당 6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전문계고에서 자체적으로 발 간된 교과서의 경우에는 교원성과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평가하여 인정할 수 있다.
- 4. 전문 학술영역의 편저, 학술자료집, 주석서, 색인집 등은 출판사를 통하여 인쇄된 것으로 건당 4.2점으로 평가한다.
- 5. 개정, 증보판은 기 출판된 저서의 내용을 개정, 증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저서의 개정, 증보판을 말하며 해당항목의 30%로 평가한다. 증빙서류 제출 시 개정, 증보 이전의 저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이전의 저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개정, 증보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6. 단, 참여인원이 10인 이상의 경우에는 제17조 연구실적 인정 환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10%로 평가한다.

제20조(구두·포스터 발표, 시평, 좌장) ①구두·포스터 발표, 시평, 좌장은 해당학술지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요건(학술지 게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등급별 기준 및 평가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8조 ③항의 각 호에 게재된 논문을 구두발표를 하였을 경우에도 점수를 부여한다.<개정 2018.11.01.>

- 1. SCI, SSCI, A&HCI, SCIE, Medline 급 학술지에 한 경우에는 7.2점으로 평가한다.
- 2. 한국연구재단(구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및 등재 후보지에 한 경우에 는 5.4점으로 평가한다.
- 3. 국내외 대학발간 학술지, 해외 전문학술지 또는 전국규모의 국내 전문학술지에 구두 발표, 포스터발표를 하였거나 단신, 속보, 시평, 초록의 게재는 3점으로 평가한다.
- 4. 지방규모의 국내 전문학술지에 구두발표, 포스터발표를 하였거나 단신, 속보, 시평, 초록의 게재는 1.8점으로 평가한다.

제21조(개발, 창작) ①국제적 공모전, 경연대회 및 초대전 등에 본 대학 소속으로 출품, 출연한 창작물(소프트웨어 분야 개발물 포함)은 건당 8.4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2인 이상 공동작품인 경우에는 제17조 연구 실적 인정 환산율을 적용한다.<개정 2018.11.01.>

- ②지자체 규모 이상의 공모전, 경연대회 및 초대전 등에 본 대학 소속으로 출품, 출연한 창작물(소프트웨어 분야 개발물 포함)은 건당 6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2인 이상 공동작품인 경우에는 제17조 연구 실적 인정 환산율을 적용한다.<개정 2018.11.01.>
- ③상기 이외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모전, 경연대회 및 초대전, 공인된 장소에서 실시하는 신작품 개인전 및 그룹전 등에 본 대학 소속으로 출품, 출연한 창작물(소프트웨어 분야 개발물 포함)은 건당 2.4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2인 이상 공동작품인 경우에는 제17조 연구 실적 인정 환산율을 적용한다.<개정 2018.11.01.>
- ④동일 또는 $1\sim2$ 개의 작품만을 교체한 전시발표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순회전의 경우 1년에 걸쳐 1회만을 인정한다.
- ⑤국제적 공모전 및 경연대회란 규모와 공모성격이 국제적이어야 하며, 내국인 포함 3개 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한 경우에 인정한다.
- ⑥전공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각 직무분야 및 자격종목에서 가장 상위 등급 국가자격증 취득 5점, 전공관련하여 국제공인심판(지도자) 자격 취득 3점 (2점), 국내공인심판(지도자) 자격 취득 2점(1점)씩 점수를 부여한다.<신설 2021.01.01.>
- 제22조(학술상) ①SCI, SSCI, A&HCI, SCIE, Medline급 학술단체의 학술상이라 함은 해당 학술단체가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수여하는 각종 상이나 패를 말하며 1회당 16.8 점으로 평가한다.<개정 2018.11.01.>
- ②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및 등재 후보지 발행단체의 학술상이라 함은 해당 학술단체가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수여하는 각종 상이나 패를 말하며 1회당 12.6점으로 평가한다.<개정 2018.11.01.>
- ③국내외 대학 학술지발간 기관장, 해외 또는 전국규모의 전문 학술단체장 및 대학총장, 지자체장, 청장급 이상의 장으로 부터 받은 학술상이라 함은 해당 학술단체가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수여하는 각종 상이나 패를 말하며 1회당 8.4점으로 평가한다.<개정 20 18.11.01.>
- ④지방 규모의 전문 학술단체장 및 대학부총장, 기초지자체장, 부청장급 이하의 장으로 부터 받은 학술상이라 함은 해당 학술단체가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수여하는 각종 상이나 패를 말하며 1회당 6점으로 평가한다.<개정 2018.11.01.>
- ⑤동일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에 대해서는 하나의 수상 실적만 인정한다.<신설 2018.11.01.> 제23조(연구보고서) ①정부(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재단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학술연구비로 연구하여 작성한 최종 연구보고서는 건당 12.6점으로 평가한다.<개정 201 8.11.01.>
- ②상기 기관 이외의 단체나 산업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학술연구조성비 또는 교내 연구과제비로 연구하여 작성한 최종 연구보고서인 경우 건당 8.4점으로 평가한다.<개정 2018.11.01.>
- 제23조의2(논문 및 과제심사) ①국내외 학술지의 논문심사나 각종 연구과제의 심사는

공인된 단체의 의뢰에 의한 것에 한하며 건당 0.6점으로 평가하고 최대 3점(5건)까지 인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1, 01.]

- **제24조(연수 활동)** ①학회, 교육과학기술부, 공공기관 등의 교내외 현장 및 온라인 연수 를 말한다.<개정 2018.11.01.>
- ②연수는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승인된 내용으로 행정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한해 인정한다.<개정 2018.11.01., 2021.01.>
- ③연수 1시간당 0.15점씩 부여한다. 단 국외의 경우에는 1.5배로 인정한다.<개정 2018.11. 01.>

제3절 산학협력업적평가

- **제25조(산학협력업적 평가기준)** ①산학협력업적 평가는 [별표 2-1]에 따른다.<개정 2018.11.01., 2022.03.01.>
- ②교양 교육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다. <신설 2018.11.01., 개정 2022.03.01.>
- ③각 항목별 평가는 세부 항목별에 배정된 점수에 의거 계산한다.<개정 2018.11.01.>
- 제26조(현장실습순회지도 & 추수지도) ①현장실습순회지도 & 추수지도는 순회지도 또는 추수지도 방문 업체마다 0.6점씩 점수를 부여한다.<개정 2018.11.01.>
- ②현장실습을 시행하고 있는 산업체를 방문하고 관련 내용을 기술하는 순회지도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단, 해당 교수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출장명령서 또는 종합정보시스템상의 캡쳐된 화면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01.01.>
- ③산업체를 방문하여 추수지도를 수행하고 관련 내용을 기술하는 추수지도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단, 해당 교수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출장명령서 또는 종합정보시스템상의 캡쳐 된 화면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01.01.>
- 제27조(현장맞춤형과제(캡스톤디자인)) ①현장맞춤형과제(캡스톤디자인) 지도는 지도실 적 당 1.2점씩 점수를 부여한다.<개정 2018.11.01.>
- ②산업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학생들의 프로젝트(작품, 논문 등)의 완성도를 높이고 산업현장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해진 양식에 의거 캡스톤디자인 제안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단, 해당 교수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제28조(인턴십)** ①학생인턴십지도는 인턴십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 1인당 0.6점씩 점수를 부여한다.<개정 2018.11.01.>
- ②채용을 전제로 하는 인턴십을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서류(협약서, 일지 등)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단, 해당 교수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제29조(창업)** ①학생창업지도는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지도한 실적으로 창업 1건당 1.8점씩 점수를 부여한다.<개정 2018.11.01.>

②학생들의 창업을 지도한 실적(관련 서류)과 실제 창업을 한 실적(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단. 해당 교수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제30조(산학협력 체결 및 관리) ①산학협력체결현황은 산학협력 체결을 통해 산업체를 유치했거나 관리 또는 교류한 실적을 평가한다. 산업체를 유치한 건수 당 0.6점씩 점수를 부여하고, 교류/관리한 실적은 건수 당 1.2점씩 점수를 부여하는데 제17조 연구실적 인정 환산율을 적용한다.<개정 2018.11.01.>
- ②산학협력 체결유치는 산학협력체결한 증빙서류(개인 단위 신청. 체결을 주도한 교수만 신청가능)를 첨부 하고, 관리/교류한 실적은 체결 업체로 학생취업 또는 현장/임상 실습을 수행하고 있는 증빙서류(학과 단위로 신청)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단, 관리/교류한 실적은 제26조의 현장실습 건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8.11.01.>
- ③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관련 산업체를 유치한 실적은 건수 당 0.6점씩 점수를 부여한다.<신설 2023.01.01.>
- 제31조(기술/경영 자문) ①기술/경영 자문은 산업체 등에 기술 또는 경영 노하우를 자문하고 자문 건수에 따라 0.6점씩 점수를 부여한다.<개정 2018.11.01.>
- ②기술/경영 자문을 실시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산업체의 자문 요구서, 자문계획서, 자문결과보고서 등)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 **제32조(산업체 연수)** ①산업체 연수는 국내외 기업체에서 연수 활동을 수행한 실적으로 1주당 0.6점씩 점수를 부여한다.<개정 2018.11.01., 2023.01.01.>
- ②산업체 연수는 최소 2주 이상 신청해야 하고, 증빙서류(협약서, 연수계획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개정 2023.01.01.>
- 제33조(산업체 특강) ①산업체 방문특강은 산업체로부터 특강을 의뢰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특정 건수 당 0.6점씩 점수를 부여한다.<개정 2018.11.01.>
- ②산업체 방문특강을 실시한 경우 증빙서류(산업체의뢰공문, 출장명령서, 강의자료 등)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 제34조(위탁 프로그램 운영) ①재직자 대상 위탁프로그램 운영은 산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공 교육 프로그램으로 1개 과정당(기본 4시간, 5명 기준) 0.9점을 부여하고, 유료로 운영한 경우(기본 12시간, 5명 기준)에는 1.5점씩 점수를 부여한다.<개정 2018.11.01., 2023.01.01.>
- ②재학생 대상 위탁프로그램(주문식 프로그램) 운영은 산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공 교육프로그램으로 1개 교과목당 1.2점씩 점수를 부여한 다.<신설 2023.01.01.>
- ③위탁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산업체의뢰공문, 프로그램실시공문, 강의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인정 할 수 있다.<개정 2023.01.01.>
- 제35조(기업부설연구소 유치) ①기업부설연구소 유치는 대학 내에 산업체의 부설연구소 를 유치 운영한 실적으로 건당 0.6점씩 점수를 부여한다.<개정 2018.11.01.>
- ②기업부설연구소를 유치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단, 해당 교수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제35조의2(공용장비 운영) ①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장비를 산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유치한 실적으로 참여 업체 1개당 0.6점씩 점수를 부여한다.

②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장비를 산업체에서 활용하고 발생하는 수익금을 유치한 실적으로 1만원당 0.1점씩 점수를 부여한다. 단, 점수는 산학협력 평가영역 배점의 1/2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수익금은 우리대학(또는 산학협력단)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한다.

③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단, 해당 교수 또는 학과의 이름 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01.01.]

제36조(기술 이전) ①기술이전은 본인이 연구 수행한 결과물을 대학 이외의 3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수입에 대해 1백만 원 당 0.6점씩 점수를 부여한다.<개정 2018.11.01.>

②기술이전을 수행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우리대학(또는 산학협력단) 명의의 통장으로 기술 이전료가 입금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서류(기술이전내용, 입금내역 등)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단. 해당 교수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37조(특허등록, 신기술/제품인증, 실용신안, 프로그램등록) ①특허등록, 신기술/제품 인증, 실용신안, 프로그램등록 건수에 따라 2점씩 점수를 부여한다. 단, 본교 임용 이후 출원에 한한다.<개정 2018.11.01., 2021.01.01., 2023.01.01..>

②연구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체와 공동으로 국내외에 등록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제38조(산업체 연구비 수혜) ①산업체 연구비 수혜실적은 산업체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한 연구비로 5백만원 당 0.6점씩 점수를 부여한다.<개정 2018.11.01.>

②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해당 연구비를 우리대학(또는 산학협력단)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단, 정부재정지원사업 등에 따른 의무적인 기업대응투자액은 제외한다.

제39조(교원 창업) ①교원 창업현황은 창업 실적으로 3점 점수를 부여한다.<개정 2018.1 1.01.>

②교원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및 학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창업을 한 경우로 사업자 대표로 교원인 경우에 한하고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제40조(산학협력교육과정개발과 비정규 교육프로그램 운영) ①산업체 인사가 참여하여 교육과정 개발 시 1건에 한하여 1.2점을 부여한다. 세부평가 내용은 교원성과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②산업체 인사가 비정규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유치에 참여하였다면 유치 1건에 한하여 1.2점을 부여한다. 세부 평가 내용은 교원성과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2.03.01.][종전 제40조는 제41조로 이동 <2022. 03. 01.>]

제40조의2(기업협업센터(ICC) 운영) ①기업협업센터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5만원당 0.1점을 부여한다. 단, 점수는 산학협력 평가영역 배점의 1/2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없다. 관련 근거로는 대학 기업협업센터 통장에 입금/이체된 자료 또는 관련 공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②기업협업센터 관련 활동 1건 당 0.6점을 부여한다. 관련 근거는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공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본조신설 2023.01.01.]

제4절 기타평가

- 제41조(평가결과) ①영역별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 학과 전임교원과 교 양 교육 전임교원을 구분하여 평가한다.<개정 2018.11.01.>
- ②일반 학과 전임교원은 [별표 2-1]에 따르며 교육중점유형과 산학중점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개정 2018.11.01., 2022.03.01.>
- ③교양 교육 전임교원은 [별표 2-2]에 따른다.<개정 2018.11.01., 2022.03.01.>
- ④산학협력중점교원은 [별표 2-1]의 산학중점유형을 선택하여야 한다.<신설 2022.03.01.>
- ⑤[별표 2-1]개인성과평가항목 및 배점 중 3.산학 구성비율은 2023년도 45%, 2024년도 55%, 2025년도 60%로 단계별 조정한다. 세부 항목의 배점 및 조정은 도래 이전 년 12 월 31일까지 규정 개정하여야 한다.<신설 2022.03.01.>
- ⑥교원성과평가 결과는 학과평가의 활용이 어려운 교양 교육 전임교원을 고려하여 구분 하여 평가하여 계산한다.<개정 2018.11.01.>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2조로 이동 <2022.03.01..>]

제4장 대학성과에 대한 기여도 평가

제1절 학과평가

제42조(평가기준) ①학과평가는 [별표 1-2] 대학성과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적용하여 일 반 학과 전임교원의 경우 1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교양 교육 전임교원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다. <개정 2018.11.01., 2021.01.01, 2023.01.01..>

②학과평가의 경우 학과 평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평가 년도 기준으로 별도의 지침을 세워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원성과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반영한다.<개정 2018.11.01.>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3조로 이동 <2022.03.01.>]

제2절 대학업무 및 사업참여도 평가

제43조(평가기준) ①대학업무 및 사업참여도 평가는 [별표 1-2]에 따른다. <개정 2018.11. 01., 2021.01.01., 2022.03.01., 2023.01.01.>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4조로 이동 <2022.03.01.>]

제43조의2(보직 및 사업팀 임명) ①임명권자 및 총장이 임명한 보직 및 사업팀 소속 교원의 경우 각각 2개 이하의 보직 및 사업 참여만을 인정하되 그 배점은 각 6점으로 한

다. <개정 2018.11.01.>

②대학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팀의 경우에는 2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개정 2018.11.01.>

③임명권자 및 총장이 임명한 보직 중 대학직제규정에 따른 부서장과 산학협력단장은 전체 평점의 평균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점이 전체 평점의 평균점수 이상이면 그 평점을 적용한다. 단 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배점의 0.5배수를 한다. 사업팀 구성원(TFT포함)의 배점은 6점*활동 개월 수/12로 한다. <신설 2021.01.01.>

[본조신설 2018. 11. 01.]

[제42조2에서 이동<2022.03.01.>]

제43조의3(각종 위원회 활동) ①각종 위원회의 경우 실질적 운영 성과에 따라 결정하되 2개 이하의 위원회 활동만을 인정한다. 단 교양 교육 전임교원의 경우 최대4개까지의 위원회 활동까지 인정한다. <개정 2018.11.01.>

②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성과는 각 부처에서 제시한 활동 내역을 참고하여 교원성과평가위원회에서 상, 중, 하로 구분하고 상은 2점, 중은 1.5점, 하는 1.0점으로 평가한다.<신설 2018.11.01.>

[본조신설 2018. 11. 01.]

[제42조3에서 이동<2022.03.01.>]

제3절 대학발전 공헌도 평가

제44조(평가 기준) ①대학발전공헌도 평가는 [별표 1-2]에 따른다.<개정 2018.11.01.,

2021.01.01., 2022.03.01., 2023.01.01.>

②점수 부여 대상이 다수인 경우 1/N을 원칙으로 한다.

[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45조로 이동 <2022.03.01.>]

제45조 삭제 <2021.01.01.>

[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46조로 이동 <2022.03.01.>]

제46조 삭제 <2021.01.01.>

[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는 제47조로 이동 <2022.03.01.>]

제47조(대학발전대외활동실적) ①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위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출제위원, 평가위원, 채점위원으로 위촉 건수에 대해 0.5점을 부여한다. 단, 국제인 경우에는 점수를 2배로 인정하여 평가한다.<신설 2018.11.01.. 개정 2021.01.01.>

②학회(협의회) 또는 교외 위원 활동은 전국 단위의 전문 학회 및 협의회, 사회봉사단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 단체의 임원에 한해 인정하며 0.5점을 부여한다. 단, 국제인 경우에는 점수를 2배로 인정하여 평가한다.<신설 2018.11.01., 개정 2021.01.01.>

③기타 활동은 우리대학 소속 이름으로 전공/직책과 관련한 분야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방송출연은 건당 1점을 부여하고, 정기간행물 게재 및 기고는 건당 0.5점을 부

여한다. 교외봉사활동은 1시간당 0.1점을 부여한다. 기타 활동은 최대 3점을 초과할 수 없고 국제인 경우에는 점수를 2배로 인정하여 평가한다.<신설 2018.11.01.>

- ④대회 입상은 우리대학 소속 이름으로 전공/직책과 관련한 분야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국가 및 공공기관, 지자체 이상 주관하는 대회에서 입상하면 2점을 부여하고, 그 외의 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0.5점을 부여한다. 단 국제인 경우에는 점수를 2배로 인정하여 평가한다.<신설 2018.11.01.>
- ⑤연구수탁은 우리대학 명의로 수탁한 외부연구용역에 한해 해당되며 1천만원당 1점으로 계산한다. 연구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1/N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8.11.01.>
- ⑥초·중·고 진로체험에 참가한 경우 건당 0.2점을 부여하고 학과 단독 입학 설명회는 건당 0.3점을 부여하고 입학처 주관 입학 설명회는 0.4점을 부여한다. 진로체험과 입학 설명회 합산 최대점수는 5점이다.<신설 2021.01.01.>
- ⑦특별위원회는 참여 점수를 4점으로 한다. 총장은 특별위원회 및 사업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01.01.>
- ⑧비정규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정규 수업이 아닌 정부주관 재정지원사업, 평생교육원 과정 운영, 기타 비정규 특별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건당 1.2점을 평가하며 공동 운영인 경우에는 제17조 연구실적인정환산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신설 2024.01.01.>

[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48조로 이동 <2022.03.01.>]

- 제48조(기타 공헌도) ①대학발전을 위해 공헌하였으나 대학성과기여도평가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성과에 한해 각 부처의 요청에 의거 총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반영한다.<신설 2018.11.01., 개정 2022.03.01.>
- ②승인을 득한 자료를 교원성과평가위원회에 통보하고, 대학성과기여도평가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하고 교원성과평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입력하도록 한다.<신설 2018.11.01., 개정 2022.03.01.>
- ③총장은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어 "[별지 제3호서식]대학발전기여 자술 공적서"를 제출한 교원에 대하여 공적을 평가한다. 가점으로 최대5점을 부여할 수 있다. 대학발전기여 공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01.01.>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제49조로 이동 <2022.03.01.>]

제5장 가·감점 평가

제1절 가치관평가 및 자기평가

제49조(평가 기준) 대학의 교육이념 및 목표에 따른 가치관평가는 평정하지 않고 자기 평가는 평가의 경우 5점 만점으로 평정한다.

[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50조로 이동 <2022.03.01.>]

제2절 포상 및 징계 평가

제50조(평가 기준) ①포상 및 징계는 '[별표 8] 포상 및 징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당해 년을 기준으로 횟수 당 중복하여 점수를 부여한다.<개정 2018.11.01.> ②가산점은 최대 5점, 감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다.<개정 2021.01.01.> [제49조에서 이동 <2022.03.01.>]

부 칙

①(준용)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교 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2)(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③(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④(평가결과의 적용단계) 2001년도 2월 이후의 업적평가결과는 승진 및 재임용심사의 기초자료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특별 연구지원금의 지급, 특별 성과금 지급, 우수교원 및 우수학과의 선정, 경고대상 교원 및 개선학과의 선정, 보수 차등지급, 연봉계약제, 정년 보장심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2001년도 업적평가 기준일은 2 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2002년도 업적평가 기준일은 2 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단, 2006년도 업적평가 기준일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2008년도 업적평가 기준일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2008년도 업적평가 기준일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17년도 교원성과평가부터 평정하되 재임용심사, 정년보장심사 및 성과 연봉제 교원의 연봉계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개인성과평가 기준 <개정 2018.11.01., 2021.01.01., 2022.03.01.>

(단위: 점)

7 H	다 기 위 ㅁ	ਅੰਮਣੀ ਧ	점수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일반	교양	
개인성과평가	교원성과평가	교원성과평가	60	70	

[별표 1-2] 대학성과에 대한 기여도 평가 <신설 2022.03.01.>

(단위: 점)

그 님	대기 첫 P	게 뷰 왕l 뉴	점수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일반	교양	
	학과평가	외부경쟁력 평가	10	0	
	의 역 작 생기	내부경쟁력 평가	10	U	
대학	대학 업무 및 사업 참여도 평가	대학업무 및 사업 참여, 위원회 활동	20	20	
성과에 대한 기여도 평가		대학발전 대내외활동 공헌도	10	10	
	대학발전 공헌도 평가	기타 공헌도			
		기타 공헌도 - 대학 발전 기여 자술공적서	가점5	가점5	
	소 계		40~	30~	
			45	35	
가감점 평가	가치관평가, 포상 및 징계	가치관평가, 포상 및 징계	+5 ~	-5	
	합계		35~50	25~40	

[별표 2-1]개인성과평가항목 및 배점 <개정 2018.11.01., 2022.03.01., 2023.01.01., 2024.01.01>

(분류 별 구성 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유형	별 점수산	출 (단위	:점)	
업적	대분류명	n/	유중점유	형	신	·학중점유 [†]	형
영역		영역내 최고 배점	최종 배점	구성 비율	영역내 최고 배점	최종 배점	구성 비율
	1.1 수업시간	6(6.6)	6(6.6)	10.0%	5(5.6)	5(5.6)	8.3%
	1.2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12	12	20.0%	3.8	3.8	6.4%
1.	1.3 학생지도	11.4	11.4	19.0%	3.2	3.2	5.4%
교육	1.4 수업활동	3.6	3.6	6.0%	2.6	2.6	4.3%
	1.5 강의평가	6	6	10.0%	5	5	8.3%
	소 계	39	39	65.0%	19.6	19.6	32.7%
	2.1 연구활동	9	9	15.0%	2.4	2.4	4.0%
2. 연구	2.2 연수 및 산업체 활동	6(9)	6(9)	10.0%	5(6)	5(6)	8.3%
	소 계	15	15	25.0%	7.4	7.4	12.3%
	3.1 실습지도활동						
3.	3.2 상호교류활동	6	6	10.0%	33	33	55.0%
산학	3.3 공동연구활동						
	소계	6	6	10.0%	33	33	55.0%
	합계	60	60	100%	60	60	100%

[별표 2-2] 개인성과평가항목 및 배점(교양교육전임교원) <신설 2018.11.01., 개정 2022.03.01., 2023.01.01., 2024.01.01>

(구성 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유형	별 점수산	출 (단위	:점)	
업적	대분류명	ī	유중점유	형	신	·학중점유	형
영역		영역내 최고 배점	최종 배점	구성 비율	영역내 최고 배점	최종 배점	구성 비율
	1.1 수업시간	6(6.6)	6(6.6)	8.6%	5(5.6)	5(5.6)	7.1%
	1.2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16	16	22.9%	8.3	8.3	11.9%
1.	1.3 학생지도	12.4	12.4	17.7%	2	2	2.9%
교육	1.4 수업활동	3.6	3.6	5.1%	2.6	2.6	3.7%
	1.5 강의평가	6	6	8.6%	5	5	7.1%
	소 계	44	44	62.9%	22.9	22.9	32.7%
	2.1 연구활동	12	12	17.1%	3.6	3.6	5.2%
2. 연구	2.2 연수 및 산업체 활동	11(16)	11(16)	15.7%	5(6.6)	5(6.6)	7.1%
	소 계	23	23	32.8%	8.6	8.6	12.3%
	3.1 실습지도활동						
3.	3.2 상호교류활동	3	3	4.3%	38.5	38.5	55.0%
산학	3.3 공동연구활동						
	소계	3	3	4.3%	38.5	38.5	55.0%
	합계	70	70	100%	70	70	100%

[별표3-1]교육업적영역평가항목및배점 <개정 2018.11.01., 2019.01.01., 2023.01.01., 2024. 01.01>

			평 가 항	목			평가	-1 A	w	
영역별	대분류			소분류			단위	점수	비고	
		주평 학업 시수	책임시수 이상 책임시수 미만 1일	당			학기당	1.5/ 1.25 -0.3	미달 시수당	
		주·야 간 강의 배분	야간강의가 있는 7 야간강의가 전혀 Q				학기당	0.3	추가 점수	
	1.1 - A A J 71	주당 수업 일수	책임일수 이상 책임일수 미만 1일	당			학기당	1.5/ 1.25 -0.3		
	수업시간 6점(6.6점)/		부총장		주 1일	3시간		I		
	5점(5.6점)		대학본부(산학협력	단)부서장	주 2일	6시간			미달 시수당	
1. 교육		직위	부속(교육)기관장, 센터장, 부센터장, 학과장(교양교육원		주 3일	9시간			71 T O	
업적			평교수		주 4일	9시간				
		교육과정개발 (신규학과, 학제변경, 계열변경학과)					건	1.2		
-교육	1.2	교육보조재 개발 (강의노트 등)					과목 2반이상	1.2 0.6	* 초과시	
중점:	교육과정 개발및운영	가상깅	의용 교육콘텐츠 가	발			과목	1.2	배정된 최고점수	
39점	12점/3.8점	혁신교육과정 운영					반수	1.2	까지만 인정	
-산학 중점:		혁신교수법					반수	0.6		
중점· 19.6점	1.3	학생	학생상담 및 지도활동(건당 : 0.036점)					0.036	초과시 배정된	
	학생지도	학과	행사참여지도 활동				건당	0.6	최고점수	
	11.4점/3.2점	교과	외 학생 학습활동 및	! 동아리(전	[공,일반)지도	활동	건당	0.6	까지만 인정	
		_, , ,		기한내 입]력		학기당	0.9/		
	1.4	상의계 	획서 입력 여부	기한 초교	}		학기당	0.6/	만점에서	
	수업활동 3.6점/2.6점			기한내 입	기한내 입력		학기당	0.9/	/ 감점	
		성적 역	입력 여부	기한 초괴	기한 초과			0.6/		
	1.5 강의평가 6점/5점	강의평	가 점수 입력	평가점수	* 3/100		학기당	3/ 2.5		

[별표3-2]교육업적영역평가항목및배점(교양교육전임교원) <신설 2018.11.01.><개정 2 019.01.01., 2023.01.01., 2024.01.01>

			평 가 항	목			평가	刀人	비고		
영역별	대분류	소분류					단위	점수	川工		
		주평 숙업 시수	책임시수 이상 책임시수 미만 1일	당			- 학기당	1.5/ 1.25 -0.3	미달 시수당		
		주·야	야간강의가 있는 7	병우				0.3	추가		
		간 강의 배분	야간강의가 전혀 6	 አ는 경우			학기당	0	점수		
		주당	책임일수 이상				-1 -1 -1	1.5/ 1.25			
	1.1 수업시간	주당 수업 일수	책임일수 미만 1일	당			학기당	-0.3			
	6점(6.6점)/		부총장		주 1일	3시간					
	5점(5.6점)		대학본부(산학협력	단)부서장	주 2일	6시간			미달 시수당		
1.	- M	부속(교육)기관장, 센터장, 부센터장, 학과장(교양교육원		주 3일	9시간						
교육 업적			평교수		주 4일	9시간					
	1.2	교육과정개발 (신규학과, 학제변경, 계열변경학과)					건	1.2			
-교육		교육보조재 개발 (강의노트 등)					과목 2반이상	1.2	초과시 배정된		
중점: 44점	교육과정 개발및운영	가상강	가상강의용 교육콘텐츠 개발					1.2	최고점수 까지만		
44·省	16점/8.3점	혁신교육과정 운영					반수	1.2	인정		
-산학		혁신교수법				반수	0.6				
중점: 22.9점		<삭	제>								
,	1.3 학생지도	학생	학생상담 및 지도활동(건당 : 0.036점)					0.036	초과시 배정된 최고점수		
	12.4점/2점	학과	학과행사참여지도 활동					0.6	까지만 인정		
		교과	교과외 학생 학습활동 및 동아리(전공,일반)지도 활동				건당	0.6	1.0		
				기한내 위	입력		학기당	0.9/			
	1.4 수업활동 3.6점/2.6점	강의계획서 입력 여부 기한 최			기한 초과		학기당	0.6/	만점에서 감점		
		,11 ·	기한내 입력		학기당	0.9/					
		성적 ^약 	력 여부 기한 초과		학기당	0.6/					
	1.5 강의평가 6점/5점	강의평	강의평가 점수 입력 평가점수 * 3/100				학기당	3/2.5			

[별표 4-1] 연구업적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개정 2018.11.01., 2021.01.01., 2023.01.01., 2024.01.01>

, , 접수				평 가 항 목	평가	_, ,	削
2한국인구제단(구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습진홍제단) 등제 및 등 제 후보지 대학받간, 해외 또는 전국규모의 국내 전문학술지 강인 1/조 강인 5.국제학술대회 초청강인/기조인설 1/15BN을 발급받은 국제적 전공 학술자서, 교재전문 학술영역의 번역시, 천충영역의 문제집 전공 학술자서, 교재전문 학술영역의 번역시, 천충영역의 문제집 교재서 4 전문 학술영역의 면역시, 한충영역의 면제, 학술자료집, 주석시, 색인집 등 5. 개집, 중보관(상기 해당 항목의 점수 × 0.3) 7.2 1. 1. 1. 1. 1. 1. 1. 1. 1. 1. 1. 1. 1.	영역별	대분류		소분류		점수	고
기재 저 후보지 3.국내의 대하발간, 해의 또는 친국규모의 국내 전문하슬지 2년 4.지방규모의 국내 전문하슬지 5.국제하슬대회 초청강인/기조인설 1.15BN을 발급받은 국제적 전공 하슬저서 또는 국제적 교재 2.15BN을 발급받은 국제적 전공 하슬저서, 교제전문 하슬업악의 전석시 전공영약의 문제집 4. 전문 학술액의 원지 3. 초중등 학교 건인정 교과서 4. 전문 학술에의 원지 하슬자료집, 주석서, 색인집 등 5. 개정, 중보판(상기 해당 항목의 접수 × 0.3) 7. 기본 2.한터, 2한국규모의 국내 전문학술대회 전수 × 0.3 1.8 1.8 1.8 1.3 국내전자 학술인약의 문제집 4. 전문 학술액의 원지 6 4. 전문 학술에의 원지 6 5. 개정, 중보판(상기 해당 항목의 접수 × 0.3) 1.8 1.8 1.8 1.3 국내전자 대화발간, 해외 또는 전국규모의 국내 전문학술대회 1.8 1.8 1.3 국내전 대학발간, 해외 또는 전국규모의 국내 전문학술대회 1.8 1.8 1.3 국내전 대학발간, 해외 또는 전국규모의 국내 전문학술대회 1.8 1.8 1.3 국내전 3.3 국내전 3.3 국내전 3.3 국내전 3.3 국내전 3.3 급대적 3.3 급대적 3.4 대학 소속으로 개발하여 출품, 출연한 창작물 2.4 대장소속으로 개발하여 출품, 출연한 창작물 2.4 대장소속으로 개발하여 출품, 출연한 창작물 2.4 대장소속으로 개발하여 출품, 출연한 창작물 3.8 대학 소속으로 개발하여 출품, 출연한 창작물 2.4 대학 소속으로 개발하여 출품, 출연한 창작물 2.4 대장소식으로 출 3.3 대학 소속으로 개발하여 출품, 출연한 창작물 2.4 대장소식으로 출 3.3 대학 소속으로 개발하여 출품, 출연한 창작물 2.4 대장소식으로 출 3.4 대학 소속으로 개발하여 출품, 출연한 창작물 2.4 대장소식으로 출 3.4 대학 소속으로 개발하여 출품, 출연한 창작물 2.4 대학 소속으로 개발하여 출품 6 6 8.4 대학 소속으로 개발하여 출발 학습내적으로부터 받은 학습상 4.4 대학구의 국내 전문학술 단체에서 받은 학습상 4.4 대학구의 학습인가보고서 또는 교내 연구보고서 발하는 기관의 학습인가보고서 또는 교내 연구보고서 발하는 기관의 학습인가보고서 또는 교내 연구보고서 발하는 기관의 의원 가장 상위 등급 취득 5 2 국제공인실관(지도자) 자격 위득 3.2 대학 조곡기관으로 대학구보고서 목을 3.2 대학구보고서 또는 교내 연구보고서 보는 교내 연구보고서 학생 3.3 국제공인실관(지도자) 자격 위득 3.3 국제공인실관(지도자) 자격 기관 4.3 급대적 2.3 급대				1.SCI, SSCI, A&HCI, SCIE, Medline급 학술지		16.8	
20						12.6	
2				3.국내외 대학발간, 해외 또는 전국규모의 국내 전문학술지	검	8.4	
장면 5국제하술대회 초청강연/기조연설 12.6 8.4 1.ISBN을 발급받은 국제적 진공 학술자시, 교재전문 학술영역의 면서, 전공영역의 문제집 3. 초등등 학교 검인정 교과서 4. 전문 학술영역의 편지, 학술자료집, 주석서, 색인집 등 5. 개정, 중보판(상기 해당 항목의 점수 × 0.3) 2한국과학제단, 학술건흥계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대회 2.한국과학제단, 학술건흥계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대회 1.8 1.3 1.4의 대학발간, 해외 또는 전국규모의 국내 전문학술대회 1.8 1.3 1.3 1.8 1.3 1.3 1.8 1.3 1.3 1.8 1.3 1.3 2.5 1.3 1.8 1.3 1.3 1.8 1.3 1.3 1.8 1.3 1.3 1.8 1.3 1.3 1.8 1.3 1.3 1.3 1.8 1.3 1.3 1.3 1.8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4.지방규모의 국내 전문학술지		6	
1.ISBN을 발급받은 국내 전공 학술저서 또는 국제적 교재 2.ISBN을 발급받은 국내 전공 학술저서, 교재전문 학술영역의 변역서, 전공영역의 문제집 지서 3. 초중등 학교 검인정 교과서 4. 전문 학술영역의 편제, 학술자료집, 주석서, 색인집 등 5. 개정, 중보판(상기 해당 항목의 점수 × 0.3) 구두 보스터, 시정, 중보판(상기 해당 항목의 점수 × 0.3) 구두 보스터, 시정, 중보판(상기 해당 항목의 점수 × 0.3) 구두 보스터, 시정, 중보판(상기 해당 항목의 점수 × 0.3) 구두 보스터, 시정, 국내의 대학반간, 해외 또는 전국규모의 국내 전문학술대회 1.8 1.3 국내의 대학반간, 해외 또는 전국규모의 국내 전문학술대회 1.8 1.3 제접 중만전, 경인대회 및 초대전 등에 본 대학 소속으로 출품, 출연한 청작물 2.국내 공모진, 경인대회 및 초대전 등에 본 대학 소속으로 출품, 출연한 청작물 3.본 대학 소속으로 개발하여 출품, 출인한 청작물 2.국내 공모진, 경인대회 및 초대전 등에 본 대학 소속으로 출품, 출연한 창작물 1.SCI, SSCI, A&HCI, SCIE, Medline급 학술단체의 학술상 3.해외 또는 전국규모의 전문 학술단체의 학술상 4.지방규모의 국내 전문학술 단체에서 반은 학술상 4.지방규모의 국내 전문학을 단체에서 받은 학술상 4.지방규모의 국내 전문학을 단체에서 받은 학술상 4.지방규모의 국내 전문학을 단체에서 반은 학술상 4.지방규모의 국내 전문학을 단체에서 한은 학술상 4.지방규모의 국내 전문학을 단체에서 한은 학술상 4.지방규모의 국내 전문학을 단체에서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학술인구보고서 또는 교내 연구보고서 한 하당 기관의 학술인구보고서 또는 교내 연구보고서 한 등급 취득 5 2.국제공인심판(지도자) 자격 취득 1.전공판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의한 가장 상위 등급 취득 5 2.국제공인심판(지도자) 자격 취득 22 연수 연수 1 학회 교과부 공포기과 등의 연수(국제는 15배 전용) 시간 0.15				5.국제학술대회 초청강연/기조연설		12.6	
2.1				6.국내학술대회 초청강연/기조연설		8.4	
지서 3. 초중등 학교 검인정 교과서 전 6 4.2 학술양역의 편지, 학술자료집, 주석서, 색인집 등 5. 개정, 증보판(상기 해당 항목의 점수 × 0.3) 구두 보스타, 시청, 3국내의 대학발간, 해외 또는 전국규모의 국내 전문학술대회 전 3국내의 대학발간, 해외 또는 전국규모의 국내 전문학술대회 원 4.4 발규지적 공모칭, 경언대회 및 초대전 등에 본 대학 소속으로 출품, 출연한 창작물 기반, 3국내의 대학발간 등제 및 초대전 등에 본 대학 소속으로 출품, 출연한 창작물 3.분 대학 소속으로 출품, 출연한 창작물 1.SCI, SSCI, A&HCI, SCIE, Medline급 학술단체의 학술상 경례: 1.5점 1.5점 1.5점 1.5점 1.5점 1.5점 1.5점 1.5점				1.ISBN을 발급받은 국제적 전공 학술저서 또는 국제적 교재		12.6	
2. 연구 입적 2.1 연구활동 4. 전문 학술영역의 편저, 학술자료집, 주석서, 색인집 등 5. 개정, 증보판(상기 해당 항목의 접수 × 0.3) 구두 1.SCI, SSCI, A&HCI, SCIE, Medline규 학술대회 구두 2.1 신형, 3.국내외 대학발간, 해외 또는 전국규모의 국내 전문학술대회 1.8 기계정, 공보낸의 대학발간, 해외 또는 전국규모의 국내 전문학술대회 2.4 검험 경안한 창작물 3.본 대학 소속으로 출품, 출연한 창작물 3.본 대학 소속으로 개발학의 출품, 출연한 창작물 3.본 대학 소속으로 개발학의 출품, 출연한 창작물 2.주내 공모전, 경영대회 및 초대전 등에 본 대학 소속으로 출품, 출연한 창작물 3.본 대학 소속으로 개발학의 출품, 출연한 창작물 2.주내 공모전, 경영대회 및 초대전 등에 본 대학 소속으로 출품, 출연한 창작물 4.지방규모의 국내 전문학술 중품, 출연한 창작물 1.SCI, SSCI, A&HCI, SCIE, Medline규 학술단체의 학술상 2.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 후보지 발행단체의 학술상 2.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 후보지 발행단체의 학술상 4.지방규모의 국내 전문학술 단체에서 받은 학술상 4.지방규모의 국내 전문학술 단체에서 받은 학술상 4.지방규모의 국내 전문학술 단체에서 받은 학술상 4.지방규모의 국내 전문학술 단체에서 발은 학술상 4.지방규모의 국내 전문학술 단체에서 발은 학술상 4.지방규모의 국내 전문학술 단체에서 발은 학술상 6. 보문 및 과제 실사 1.전공관련 국가기술자격범 시행규칙에 의한 가장 상위 등급 취득 5 지역 1.전공관련 국가기술자격범 시행규칙에 의한 가장 상위 등급 취득 5 3.(2) 3.국내공인심관(지도자) 자격 취득 3.(2) 3.국내공인심관(지도자) 자격 취득 3.(2) 1. 한국 기관의 교과부 공공기관 등의 연수(국제는 1.5배 전용) 시간 0.15				2.ISBN을 발급받은 국내 전공 학술저서, 교재전문 학술영역의 번역서, 전공영역의 문제집		8.4	
2. 연구 입적 2.1 시행, 3.국내외 대학발간, 해외 또는 전국규모의 국내 전문학술대회 1.8 시행, 3.국내외 대학발간, 해외 또는 전국규모의 국내 전문학술대회 1.8 시행, 3.국내외 대학발간, 해외 또는 전국규모의 국내 전문학술대회 1.8 시청 가장 4.지방규모의 국내 전문학술대회 1.8 오고전, 경연대회 및 초대전 등에 본 대학 소속으로 출품, 출연한 창작품 3.본 대학 소속으로 개발하여 출품, 출연한 창작물 1.SCI, SSCI, A&HCI, SCIE, Medline급 학술단체의 학술상 2.착 시장마구모의 국내 전문학술 당착물 3.환 대학 소속으로 개발하여 출품, 출연한 창작물 1.SCI, SSCI, A&HCI, SCIE, Medline급 학술단체의 학술상 2.차 기관 이외의 단체에서 받은 학술상 4.지방규모의 국내 전문학술 단체에서 받은 학술상 6. 2. 상기 기관 이외의 단체나 산업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학술연구보고서 또는 교내 연구보고서 1. 전공관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의한 가장 상위 등급 취득 자격증 2.국제공인심관(지도자) 자격 취득 3.국내공인심관(지도자) 자격 취득 3.구내공인심관(지도자) 자격 취득 3.국내공인심관(지도자) 자격 취득 3.구내공인심관(지도자) 자격 취득 3.구내공인심관(지도자) 자격 취득 3.구내공인심관(지도자) 자격 취득 3.구대공인심관(지도자) 자격 취득 3.구대공연(지도자) 자격 3.구대공연(지도자) 지급			저서	3. 초중등 학교 검인정 교과서	건	6	
2. 연구				4. 전문 학술영역의 편저, 학술자료집, 주석서, 색인집 등		4.2	
2.1 연구항동 2.1 시행, 3국내외 대학발간, 해외 또는 전국규모의 국내 전문학술대회 1.8 1.8 3국내외 대학발간, 해외 또는 전국규모의 국내 전문학술대회 1.8 1.8 1.5점 9점/2.4점 9점/2.4점 기발, 장작 2국내 공모전, 경연대회 및 초대전 등에 본 대학 소속으로 출품, 출연한 창작물 1.5대 조속으로 개발하여 출품, 출연한 창작물 1.5CI, SSCI, A&HCI, SCIE, Medline급 학술단체의 학술상 2.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 후보지 발행단체의 학술상 1.26 8.4 4.지방규모의 국내 전문학술 단체에서 받은 학술상 1.26 8.4 6 1. 정부(총연)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재단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학술연구 보고서(최종 연구보고서만 해당) 2. 상기 기관 이외의 단체나 산업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학술연구보고서 또는 교내 연구보고서 보는 교내 연구보고서 보는 교내 연구보고서 1.전공관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의한 가장 상위 등급 취득 지수적 2.국제공인심판(지도자) 자격 취득 3.국내공인심판(지도자) 자격 취득 2. 전기 한화 교과부 공공기과 등의 연수(국제는 1.5배 점용) 시간 0.15				5. 개정, 증보판(상기 해당 항목의 점수 × 0.3)			
입적 2.1 연구활동 전쟁 3.국내외 대학발간, 해외 또는 전국규모의 국내 전문학술대회 1.8 1.8 1.8 1.4 1.4 1.5	2.		구두	1.SCI, SSCI, A&HCI, SCIE, Medline급 학술대회		7.2	
입적 2.1 연구활동 전쟁 3.국내외 대학발간, 해외 또는 전국규모의 국내 전문학술대회 1.8 1.8 1.8 1.4 1.4 1.5	연구		· 포스터,	2.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대회	71	5.4	
-교육 중점: 15점	업적		2.1 시평, 연구활동 좌장		[건 	3	
중점: 15점				4.지방규모의 국내 전문학술대회		1.8	
-산학 중점: 7.4점 1.SCI, SSCI, A&HCI, SCIE, Medline급 학술단체의 학술상 1.SCI, SSCI, A&HCI, SCIE, Medline급 학술단체의 학술상 2.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 후보지 발행단체의 학술상 1.2.6 8.4 4.지방규모의 국내 전문학술 단체에서 받은 학술상 6 1. 정부(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재단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학술연구 보고서(최종 연구보고서만 해당) 1.2.6 2. 상기 기관 이외의 단체나 산업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학술연구보고서 또는 교내 연구보고서 2. 상기 기관 이외의 단체나 산업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학술연구보고서 또는 교내 연구보고서 2. 상기 기관 이외의 단체나 산업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학술연구보고서 또는 교내 연구보고서 3.4 2.5 2.3 3.4 3.4 3.4 3.4 3.4 3.4 3.4 3.4 3.4 3		9점/2.4점		출품, 출연한 창작물		8.4	
-산학 중점: 7.4점 1.SCI, SSCI, A&HCI, SCIE, Medline급 학술단체의 학술상 1.SCI, SSCI, A&HCI, SCIE, Medline급 학술단체의 학술상 2.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 후보지 발행단체의 학술상 1.2.6 8.4 4.지방규모의 국내 전문학술 단체에서 받은 학술상 6 1. 정부(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재단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학술연구 보고서(최종 연구보고서만 해당) 1.2.6 2. 상기 기관 이외의 단체나 산업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학술연구보고서 또는 교내 연구보고서 2. 상기 기관 이외의 단체나 산업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학술연구보고서 또는 교내 연구보고서 2. 상기 기관 이외의 단체나 산업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학술연구보고서 또는 교내 연구보고서 3.4 2.5 2.3 3.4 3.4 3.4 3.4 3.4 3.4 3.4 3.4 3.4 3		о <u>п</u> , д. т п		2.국내 공모전, 경연대회 및 초대전 등에 본 대학 소속으로 출 품, 출연한 창작물		6	
중점: 7.4점 2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 후보지 발행단체의 학술상 2.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 후보지 발행단체의 학술상 3.해외 또는 전국규모의 전문 학술단체장으로부터 받은 학술상 4.지방규모의 국내 전문학술 단체에서 받은 학술상 6 1. 정부(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재단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학술연구 보고서(최종 연구보고서만 해당) 2. 상기 기관 이외의 단체나 산업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학술연구보고서 또는 교내 연구보고서 보는 교내 연구보고서 보는 교내 연구보고서 보는 교내 연구보고서 기관의 학술연구보고서 또는 교내 연구보고서 5 2.국제공인심판(지도자) 자격 취득 3(2) 3.국내공인심판(지도자) 자격 취득 2(1) 1 학회 교과부 공공기관 등의 연수(국제는 1.5배 전용) 시간 0.15						2.4	
7.4점 학술상 2.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 부모시 발행단체의 약물장 건 3.해외 또는 전국규모의 전문 학술단체장으로부터 받은 학술상 4.지방규모의 국내 전문학술 단체에서 받은 학술상 6 1. 정부(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재단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학술연구 보고서(최종 연구보고서만 해당) 12.6 보고서 2. 상기 기관 이외의 단체나 산업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학술연구보고서 또는 교내 연구보고서 논문 및 과제 심사 논문 및 과제물에 대한 심사 건 0.6 대 3 1.전공관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의한 가장 상위 등급 취득 5 2.국제공인심판(지도자) 자격 취득 3(2) 3.국내공인심판(지도자) 자격 취득 2(1)				1.SCI, SSCI, A&HCI, SCIE, Medline급 학술단체의 학술상		16.8	
3.해외 또는 전국규모의 전문 학술단체장으로부터 받은 학술상 4.지방규모의 국내 전문학술 단체에서 받은 학술상 6 1. 정부(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재단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학술연구 보고서(최종 연구보고서만 해당) 12.6 보고서 2. 상기 기관 이외의 단체나 산업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학술연구보고서 또는 교내 연구보고서 보는 기관의 학술연구보고서 또는 교내 연구보고서 보는 기관의 작술연구보고서 또는 교내 연구보고서 보건 기관의 기관			치.스 xl	2.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 후보지 발행단체의 학술상	7]	12.6	
변구 1. 정부(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재단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학술연구 보고서(최종 연구보고서만 해당) 12.6 보고서 2. 상기 기관 이외의 단체나 산업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학술연구보고서 또는 교내 연구보고서 본문 및 과제 심사 2는문 및 과제물에 대한 심사 전체 의한 가장 상위 등급 취득 3(2) 3.국내공인심판(지도자) 자격 취득 3(2) 3.국내공인심판(지도자) 자격 취득 2(1)	7.4名		의 돌 강	3.해외 또는 전국규모의 전문 학술단체장으로부터 받은 학술상	<u>신</u>	8.4	
연구 기관의 학술연구 보고서(최종 연구보고서만 해당) 12.5 보고서 2. 상기 기관 이외의 단체나 산업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학술연구보고서 또는 교내 연구보고서 모든 고내 연구보고서 보문 및 과제 물에 대한 심사 전 1.전공관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의한 가장 상위 등급 취득 5 지격증 2.국제공인심판(지도자) 자격 취득 3(2) 3.국내공인심판(지도자) 자격 취득 2(1)				4.지방규모의 국내 전문학술 단체에서 받은 학술상		6	
보고서 2. 상기 기관 이외의 단체나 산업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학술연구보고서 또는 교내 연구보고서 및 가제 심사 논문 및 과제물에 대한 심사 전 0.6 대 3 1.전공관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의한 가장 상위 등급 취득 5 2.국제공인심판(지도자) 자격 취득 3(2) 3.국내공인심판(지도자) 자격 취득 2(1)			연구	1. 정부(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재단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학술연구 보고서(최종 연구보고서만 해당)		12.6	
및 과제 심사				2. 상기 기관 이외의 단체나 산업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8.4	
1.전공관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의한 가장 상위 등급 취득 5 2.국제공인심판(지도자) 자격 취득 3(2) 3.국내공인심판(지도자) 자격 취득 2(1) 2.2 연수 연수 1 학회 교과부 공공기관 등의 연수(국제는 1.5배 적용)			및 과제	논문 및 과제물에 대한 심사	건	0.6	대
3.국내공인심판(지도자) 자격 취득 2(1) 2.2 연수 이 연수 1 학회 교과부 공공기관 등의 연수(국제는 1.5배 적용) 시간 0.15			<u> </u>	1.전공관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의한 가장 상위 등급 취득		5	
2.2 연수			자격증	2.국제공인심판(지도자) 자격 취득		3(2)	
				3.국내공인심판(지도자) 자격 취득		2(1)	
5점(6점)		6점(9점)/	연수	1.학회, 교과부, 공공기관 등의 연수(국제는 1.5배 적용)		0.15	

[별표 4-2] 연구업적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교양 교육 전임교원) <신설 2018.11.01.> <개정 2021.01.01., 2023.01.01., 2024.01.01>

		평 가 항 목	평가	> >	削
영역별	대분류	소분류	단위	점수	고
		1.SCI, SSCI, A&HCI, SCIE, Medline급 학술지		16.8	
		논문 게재 후보지 2.한국연구재단(구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및 등		12.6	
		초청 3.국내외 대학발간, 해외 또는 전국규모의 국내 전문학술지 강연	 건	8.4	
		^ _ 4.지방규모의 국내 전문학술지		6	
		기조 강연 5.국제학술대회 초청강연/기조연설		12.6	
		6.국내학술대회 초청강연/기조연설		8.4	
		1.ISBN을 발급받은 국제적 전공 학술저서 또는 국제적 교재		12.6	
		2.ISBN을 발급받은 국내 전공 학술저서, 교재전문 학술영역의 번역서, 전공영역의 문제집		8.4	
		저서 3. 초중등 학교 검인정 교과서	건	6	
		4. 전문 학술영역의 편저, 학술자료집, 주석서, 색인집 등		4.2	
		5. 개정, 증보판(상기 해당 항목의 점수 × 0.3)			
2.	· 포스터	구두 1.SCI, SSCI, A&HCI, SCIE, Medline급 학술대회		7.2	
연구		· 포스터, 2.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대회	- 건	5.4	
업적		시평, 3.국내외 대학발간, 해외 또는 전국규모의 국내 전문학술대회	\ \frac{\frac{1}{2}}{}	3	
		좌장 4.지방규모의 국내 전문학술대회		1.8	
-교육	12점/3.6점	1.국제적 공모전, 경연대회 및 초대전 등에 본 대학 소속으로 출품, 출연한 창작물		8.4	
중점: 23점		개발, 창작 품, 출연한 창작물 및 초대전 등에 본 대학 소속으로 출	-	6	
,1 =1		3.본 대학 소속으로 개발하여 출품, 출연한 창작물		2.4	
-산학 중점:		1.SCI, SSCI, A&HCI, SCIE, Medline급 학술단체의 학술상		16.8	
8.6점		2.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 후보지 발행단체의 학술상 학술상	- 건	12.6	
0.0 [3.해외 또는 전국규모의 전문 학술단체장으로부터 받은 학술상		8.4	
		4.지방규모의 국내 전문학술 단체에서 받은 학술상		6	
		1. 정부(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재단 및 이에 준하는 연구 기관의 학술연구 보고서(최종 연구보고서만 해당)		12.6	
		보고서 2. 상기 기관 이외의 단체나 산업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학술연구보고서 또는 교내 연구보고서		8.4	
		논문 및 본문 및 과제물에 대한 심사 과제 심사	건	0.6	최 대 3
		1.전공관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의한 가장 상위 등급 취득		5	
		자격증 2.국제공인심판(지도자) 자격 취득 3.국내공인심판(지도자) 자격 취득		3(2)	
	2.2 연수	3. 1 1 0 CE C (10-17 1 1 11 11 1		- \1/	
	11(16)점/	연수 1.학회, 교과부, 공공기관 등의 연수(국제는 1.5배 적용)	시간 당	0.15	
	5(6.6)점				

[별표 5-1] 산학업적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개정 2018.11.01., 2021.01.01., 2022.03.01., 2023.01.01., 2024.01.01>

			평 가 항 목	평가		
영역별	대분류		소 분 류	단위	점수	비고
		현장실습	현장실습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건당	0.6	
	3.1 실습지도	캡스톤 디자인	캡스톤 디자인 수행 실적	건당	1.2	
	활동	인턴십	학생 인턴십 운영 실적	건	0.6	
		창업	학생 창업 지원 및 지도 실적	건수	1.8	
		산학협력	산학협력 체결 실적	건수	0.6	
		체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기관 유치 실적	건수	0.6	
		및 관리	산학협력 교류 및 관리 실적	건수	1.2	
		가술/경영 자문실적	기술/경영 자문한 실적	건당	0.6	
		산업체 연수	연구년 또는 방학을 통해 국내외 산업체 연수 실적 (2주 이상)	주	0.6	
3.	3.2 상호교류	산업체 특강	산업체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하는 산업체 방문 특강	건수	0.6	
산학	활동	위탁프로	재직자 대상 무료 전공프로그램 운영(4시간, 5명 기준) 재직자 대상 유료 전공프로그램 운영(12시간, 5명 기준)	건(무료) 건(유료)	0.9 1.5	
업적		그램운영	재학생 대상 프로그램(주문식) 운영 실적	과목수	1.2	
-교육		기업부설 연구소 유치	대학내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실적	건	0.6	
중점:		공용장비 활용건수	대학 공용 장비에 대한 산업체의 활용 기업 수	건	0.6	
6점			대학 공용 장비에 대한 산업체 활용 수익금 (산학업적 배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만	0.1	
-산학		기술이전	연구결과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수익 실적	백만	0.6	
중점:		특허출원,	특허 등록 실적	건	2	
33점		실용신안,	신기술/제품인증 실적	건	2	
		프로그램	실용 실안 실적	건	2	
		등록	프로그램 등록 실적	건	2	
	3.3	산업체연 구비수혜	산업체로부터 수주 받은 연구비	5백만	0.6	
	공동연구 활동	산학교육 과정개발	산학관련 교육 개발	건	1.2	1건
		비정규교 육프로그 램운영	산업체 인사 학교 특강	건	1.2	1건
		교원창업	교원의 창업 실적	건	3	
		ICC운영	ICC 운영 수익금 (산학업적 배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5만	0.1	
			ICC 운영 활용 건수	건	0.6	

[별표 5-2] 산학업적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교양 교육 전임교원) <신설 2018.11.01.> <개정 2021.01.01., 2023.01.01., 2024.01.01>

			평 가 항 목	평가			
영역별	대분류		소 분 류	단위	점수	비고	
		현장실습	현장실습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건당	0.6		
	3.1 실습지도	캡스톤 디자인	캡스톤 디자인 수행 실적	건당	1.2		
	활동	인턴십	학생 인턴십 운영 실적	건	0.6		
		창업	학생 창업 지원 및 지도 실적	건수	1.8		
		산학협력	산학협력 체결 실적	건수	0.6		
		체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기관 유치 실적	건수	0.6		
		및 관리	산학협력 교류 및 관리 실적(연구실적환산 적용)	건수	1.2		
		가술/경영 자문실적	기술/경영 자문한 실적	건당	0.6		
		산업체 연수	연구년 또는 방학을 통해 국내외 산업체 연수 실적 (2주 이상)	주	0.6		
3.	3.2 상호교류	산업체 특강	산업체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하는 산업체 방문 특강	건수	0.6		
산학 업적	황	위탁프로	재직자 대상 무료 전공프로그램 운영(4시간, 5명 기준) 재직자 대상 유료 전공프로그램 운영(12시간, 5명 기준)	건(무료) 건(유료)			
		그램운영	재학생 대상 프로그램(주문식) 운영 실적	과목수	1.2		
-교육		기업부설 연구소 유치	대학내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실적	건	0.6		
중점:		공용장비 · 활용건수	대학 공용 장비에 대한 산업체의 활용 기업 수	건	0.6		
3점			대학 공용 장비에 대한 산업체 활용 수익금 (산학업적 배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만	0.1		
-산학 중점:		기술이전	연구결과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수익 실적	백만	0.6		
38.5점		특허출원,	특허 등록 실적	건	2		
		실용신안,	신기술/제품인증 실적	건	2		
		프로그램	실용 신안 실적	건	2		
		등록	프로그램 등록 실적	건	2		
	3.3	산업체연 구비수혜	산업체로부터 수주 받은 연구비	5백만	0.6		
	공동연구 활동	산학교육 과정개발	산학관련 교육 개발	건	1.2	1건	
		육프로:	비정규교 육프로그 램운영	산업체 인사 학교 특강	건	1.2	1건
		교원창업	교원의 창업 실적	건	3		
		ICC운영	ICC 운영 수익금 (산학업적 배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5만	0.1		
			ICC 운영 활용 건수	건	0.6		

[별표 6] 대학업무 및 사업참여도 평가 <개정 2018.11.01., 2021.01.01.>

구 분	기 준	배 점
보직	대학 직제 상 보직자	6
및 사업팀	사업팀 구성원(TFT 포함) 등	O
_	상	2.0
각종 위원회	중	1.5
	하	1.0

* 사업팀 구성원 : 임명권자 및 총장의 위촉을 받아 운영되는 팀(센터)의 구성원*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기준(구분)의 경우 교원성과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함.

[별표 7] 대·내외활동 실적 <개정 2018.11.01., 2021.01.01., 2024.01.01>

	대·내외활동분야	점수		
시험문제출제 및 채점위원	정부 및 공공기관 시험의 출제위원, 평가위원, 채점위원	건당 0.5점 (국외 : 1.0점)		
교외 위원 또는 학회(협의회) 활동	학술 및 학회 임원 또는 임원	건당 0.5점 (국외 : 1.0점)		
	전국 및 시·도 규모 전문학회 또는 협의회 임원	건당 0.5점 (국외 : 1.0점)		
	공공기관 및 사회봉사단체 임원	건당 0.5점 (국외 : 1.0점)		
	방송출연	국내・외 : 건당 1.0		
기타 활동 ※ 3점 초과 불가	정기 간행물 게재 및 기고	국내·외 : 건당 0.5점		
	교외봉사활동	국내·외 : 시간 당 0.1점		
	국가 및 공공기관, 지자체 이상 주관하는 대회 입상	국내 : 2.0점 (국제규모 : 4.0점)		
대회 입상	국가 및 공공기관, 지자체를 제외한 단체 에서 주관하는 대회 입상	건당 : 0.5점 (국제규모 : 1.0점)		
연구수탁	의부수탁 연구용역 (대학 명으로 수탁한 경우에 한함)		천만 원 이상 1건당 1점	
진로체험 또는 입학설명회	초·중·고 진로체험	건당 0.2점	최대 5점	
	입학설명회(학과단독)	건당 0.3점		
	입학설명회(입학처 주관)	건당 0.4점		
특별위원회	총장이 정한 특별위원회 및 사업 (위원회 활동 개수에 포함되지 않음)	4점		
비정규프로그램	비정규 교육프로그램 운영	건당 1.2점		

[별표 8] 포상 및 징계 <개정 2018.11.01., 2021.01.01.>

		구 분	점수	
수상 및 공훈 (5점 범위)	• 국가 수여 훈	• 국가 수여 훈장		
	• 국가 수여 포	• 국가 수여 포장		
	• 대통령 표창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2점	
	· 장관급 표창		1.5점	
	· 이사장 표창		2점	
	· 총장 표창		1.5점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위반 (-5점 범위)		• 정직	-5점	
	교육관계 법령준수	· 감봉	-3점	
		• 견책	-2점	
		• 경고	-1점	

[※] 평가 기준년 중복하여 산정 할 수 있음(최대 +5점 ∼ -5점)

[※] 협회 및 학회 표창은 인정되지 않음. 또한 입상도 제외됨

[별지제1호서식]

재심 청구서

소속 :

직급 :

성명 :

본인은 금번 시행된 교원성과평가에 대한 재심을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 아 래 -

청구영역	청구내용

※ 첨부서류: 1. 평가결과통지서 사본

2. 재심에 필요한 증빙서류

20 년 월 일

청구인: (인)

대전보건대학교 교원성과평가위원회 귀하

[별지제2호서식]

교과 외 학생학습활동 및 동아리 지도활동 참여일지

기간	행사명	장소	행사내용	참가인원	비고

[별지제**3호서식**] <신설 2021.01.01.>

	대학발전	기여	자술 공	공적서	
소 속			성 명		
공적분야	· 입시 및 대학홍보 . 학생취업				기타 대학발전기여 1 외
공적내용					
첨부 : 공	·적 증빙서류(해당자)				
		위 사	실을 확인함.		
	2	20 .			
소속	학부(과)명 :		성 명	:	(서명)
대전보건대학교총장 귀하					